

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를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 (대표자)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내용 (처분일)	처분근거
태광건설(주) (위태환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경남98-10-68)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7-19 청라에이스프라자 701-1호 (청라동)	시정명령 (2024.11.18.)	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

2. 시정내용 : 건설가설재 대여금 지급완료 증빙서류 2024. 11. 29.(금)까지 제출

3. 공고장소 :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, 건설업관리시스템

4. 기타사항

- 가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나.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☎560-4484)로 문의바랍니다.